#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9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한지아·조지연·강승규

김승수 · 정성국 · 김형동

진종오 · 김예지 · 고동진

백종헌 · 서지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흥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중학교의 학 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 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고 함(안 제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14歲되지"를 "13세가 되지"로, "者의 行爲는 罰하지"를 "자의 행위는 벌하지"로 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第9條(刑事未成年者)</u> <u>14歲되지</u> 아 | 제9조(형사미성년자) 13세가 되지 |
| 니한 <u>者의 行爲는 罰하지</u> 아니           | <u>자의 행위는 벌하지</u>   |
| 한다.                               | <b>.</b>            |